

2025학년도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주요 내용 (1)

학업성적관대정 연수 주관: 교무부

2025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이 <u>전면 개정</u>되어, 이를 반영하여 본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내용을 <u>학기별 1회</u>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는 학업 성적관리규정 전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 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 1학년 성적산출방식
- ▶ 고교학점제(학점이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 ▶ 학기초 평가계획 수립, 성취평가제
- ▶ 지필평가 출제시 공동검토, 문항오류 처리
- ▶ 성적미산출 위탁교육기관 학생의 결시처리

주요 내용 살펴보기

제3장 출결상황 관리

규정	내용
제7조	수업일수
제8조	결석 처리
제9조	지각·조퇴·결과 처리
제10조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 수강학생 출결 처리
제11조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출결 처리
제12조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 기재

※ 1학년 수업일수

제7조 8항

- 제2항의 '<u>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외에도, 교과목별 학점 취득을 위한 이수 기준으로</u> '**과목 출석률(실제 운영한** 수업 횟수의 3분의 2이상 출석)' <u>을 적용</u>한다.(1학년)
- 과목 담당교시는 매시간 학생의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나이스에 입력해야 함. 단. 출석인정 결석(결과)의 경우. 출석으로 반영함.
- ※ 출석인정결석 처리 중 변경 내용

제8조 4항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 출석인정결석일수 3일
- ▶ 1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제2항에 따른 분리조치 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학교 외의 장소에서 학생을 분리조치하는 경우
 - 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제6항에 따라 학생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의견진술 절차 등의 사유로 참석하는 경우
 - 2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제2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같은 법 제25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결석하는 경우





제4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규정	내용	규정	내용	규정	내용
제13조	평가의 목표 및 방침	제18조	지필평가 보안 관리	제23조	성적 산출(학년별)
제14조	평가 운영 시 유의사항	제19조	지필평가 시행 관리	제24조	성취도 및 분할점수(학년별)
제15조	평가 계획 수립	제20조	정답 공개	제25조	석차 및 석차등급(학년별)
제16조	수행평가	제21조	채점 및 답안지 처리	제26조	수강자수(학년별)
제17조	지필평가 출제	제22조	인정점 부여	제27조	평가 결과 분석 및 활용

※ 평가 계획 및 시행

제13조 4항

•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u>교과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교과협의</u> 회를 통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업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 6항

• 수행평가는 수업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시간 외 가정 등에서 이루어지는 <u>'과제형 수행평가'</u>는 실시하지 않는다.

제15조 6항

•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한다. 기본점수 부여 여부 및 부여 점수는 평가의 목적, 성취수준 측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여 평가 계획에 명시한다. 이때, 기본 점수가 학기단위 평가 결과 성취율 40%이상으로 부여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단, 2015개정 교육과정의 2,3학년 과목의 경우 과목 특성에 따라 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기본점수: 수행평가에 참여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최소의 점수

제15조 7항

- 확정된 평가 계획은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공개한다. 또한, <u>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u> 하여 **평가 실시 전에 재공지**한다.
 - ★ <u>확정된 평가 계획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u>하게 되면, <u>반드시 평가 이전에 교과협의회를 거쳐</u>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u>변경사항 심의 및 학교알리미 수정 업로드</u> 해야 합니다!

수행평가 채점도 계획서에 명시된 점수로만 부여 가능하며, 평가계획서와 상이한 부분 점수가 발생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변경 심의 과정을 거쳐 재공지되어야 합니다.★

제16조 3항

• <u>수행평가 표절 행위 처리 기준</u>은 평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교과별 평가계획에 명시하며, 표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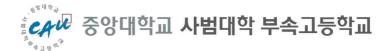
※ 수행평가 자료 보관

제16조 6항, 7항, 8항

- ▶ 자료의 보관기간은 <u>당해 학년도</u>까지, 수행평가 결과물의 보관 기간은 <u>당해 학년도</u>까지
- ▶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수행평가 성적일람표 등)는 <u>졸업 후 1년간</u> 보관
- ※ 시험지 유출 처리

제18조 4항

▶ 시험지 유출이 발생한 경우 <u>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원인 파악 및 처리 방법, 재발 방지 대책을 심의한 후</u> 재시험 등 처리 방법을 학교장이 결정하고, 관련자는 징계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 인정점 부여

제22조 6항, 7항

- ▶ 지필평가 결시 사유별 인정 비율(100%, 80% 등)에 따른 인정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 1. <u>결시 이전·이후 해당 교과목의 지필평가 점수가 있는 경우</u>에는 해당 교과목에 응시한 지필평가의 평 균점수비율을 반영하여 점수를 산출하여 부여한다. (산출방법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 바람)
 - ※ 인정점 부여 시 교육정보시스템의 평균점수·평균점수비율에서 사용하는 평균은 당해 지필평가(중간고사, 기 말고사 등)에 응시한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응시학생의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함
 - 2. <u>결시 이전·이후 해당 교과목의 지필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u>에는 해당 교과목에 학생이 응시한 수행평가영역의 평 균점수비율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출하여 부여한다. (산출방법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 바람)

제22조 7항

• 수행평가 결시생에 대한 인정점은 각 교과협의회에서 정한다.

※ 분할점수 산출 방식

제24조 2항

• 분할점수 산출 방식은 과목별로 정하여 학기단위 평가계획에 포함한다. <u>추정분할점수 설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의</u>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산출하며, 과목별 분할점수는 평가 시행 전에 학생 및 보호자에게 공지한다.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관련

제24조 3항

• 과목 이수기준에 따라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실시하며, 운영의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그 외 학생선수, 위탁학생, 의료지원 필요 학생, 장애학생, 이주민 및 탈북학생의 경우, 다음호와 같이 실시하다.

※ 동점자 처리

제25조 3항, 4항

▶ 석차등급을 산출하는 과목은 동점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하여 동점자를 처리한다.

방안명	방안순위	방안내 순위
지필/수행 순	1	
지필고사		1
수행영역		2
지필고사/수행영역 [*] 순	2	
[지필] 중간고사		2
[지필]기말고사		1
[수행]A영역		3
[수행]B영역		4

※ 수행영역은 **높은 배점순**으로 하되, 배점이 같은 경우 **과목별 평가계획서에 명시한 평가영역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고도 동점자가 발생하여 등급 경계에 있는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이때 제2항 표의 비율은 중간석차백분율로 사용한다. 단, 중간석차 적용은 동점자(동석차) 가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등급 범위 내에서 생기는 동점자(동석차)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 5장의 내용은 다음 학기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